

부속서 III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태국

목록 가

주해

1. 이 목록은 제10장(투자)에 따라서만 작성된다. 제8장(서비스 무역) 및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따라 작성된 모든 태국의 약속은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및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각각의 태국 양허표에서 확인된다.
2.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이 목록은 다음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태국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 다.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3.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른 이 목록 및 목록 나는 두 목록 방식과 함께 네거티브 목록을 따르며,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이 목록은 기존의 비합치 조치와 관련된 약속을 규정한다.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 제1항은 이 목록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 나. 목록 나는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서의 조치와 관련된 정책 유연성을 규정한다.
4. 태국은 이 유보목록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의 기간 동안 이 목록에 규정된 자국의 유보항목을 추가,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비합치 조치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모든 추가, 철회 또는 수정은 관련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기탁처에 제출될 것이고 기탁처는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할 것이다. 그러한 유보항목은 그러한 통보 시 이 유보목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각 유보항목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 또는 분야들을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산업, 제품 및 행위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제3차 개정안에 따라 유보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유보가 분류체계에 정확하게 합치하지 않는 경우 태국은 그 유보의 정확한 적용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예: 중앙 또는 지방)을 명시한다.

마. **의무유형**은, 각 경우에 맞게,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칭한다.

바. **조치내용**은 유보에 대하여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기술한다. 그리고

사. **조치근거**는 유보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에 대하여 투명성 목적으로만 적시된다.

6. 유보를 해석할 때,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조치내용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7. 이 주해는 이 목록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	오락용 카드
산업분류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소비세국 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연인이나 법인도 오락용 카드의 생산 또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근거	: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486 년(1943) 오락용 카드법 및 그 하위 법령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60 년(2017) 소비세법 및 그 하위 법령

2.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지폐 제조 및 조폐
산업분류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태국중앙은행만이 태국중앙은행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태국 정부 지폐를 인쇄, 관리, 발행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갖는다. 재무부만이 주화를 주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갖는다. 재무부로부터의 권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인도 화폐를 위한 모든 재료 또는 토큰을 제작, 발행, 사용 또는 유통하지 않는다.
조치근거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01 년(1958) 통화법

3.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	복권 제조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태국 복권청만이 태국에서 복권을 생산, 관리 그리고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조치근거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17 년(1974) 태국 복권청법

4.

분야	:	농업
하위분야	:	양과 종자 번식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지분 참여는 양과 종자 번식에 대한 사업의 등록된 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치근거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42 년(1999) 외국인 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

5.

분야	:	수산업
하위분야	:	- 참다랑어 심해 가두리 양식 및 토착 번식 스파이니 랍스터
산업분류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지분 참여는 참다랑어 심해 가두리 양식 및 토착 번식 스파이니 랍스터[파누리루스 버시컬러(<i>Panulirus versicolor</i>), 파누리루스 호마루스(<i>P. homarus</i>), 파누리루스 오나투스(<i>P. ornatus</i>), 파누리루스 롱기페스(<i>P. longipes</i>), 파누리루스 페니시라투스(<i>P. penicilatus</i>) 및 파누리루스 폴리하구스(<i>P. polyphagus</i>)]에 대한 사업의 등록된 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조치근거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42 년(1999) 외국인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

6.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분야	:	대리석 광업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지분 참여는 대리석 광업에 대하여 등록된 사업 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정부 양허의 적용을 받는다.
조치근거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42 년(1999) 외국인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

7.

분야	:	원유 및 가스 관련 추출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지분 참여는 석유 및 가스 관련 추출에 대하여 등록된 사업 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정부 양허의 적용을 받는다.
조치근거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42년(1999) 외국인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

8.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	담배 제품 제조업
산업분류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담배 제품의 생산은 태국담배청에게만 허용된다.
조치근거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61 년(2018) 태국담배청법

9.

분야	:	수산업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ISIC 0500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¹ 또는 외국 국적 어선은 태국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면허 또는 어업을 위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근거	:	- 불기 2558 년(2015) 수산업 긴급 칙령 - 불기 2482 년(1939) 태국 수역 내 어업권 규율에 관한 법 - 불기 2481 년(1938) 태국 선박법

¹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외국인”의 정의는 「불기 2542 년(1999) 외국인사업법」을 따른다.

10.

분야	:	농업
하위분야	:	육우 사업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지분 참여는 육우 사업에 대한 등록된 사업 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치근거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42 년(1999) 외국인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

목록 나

주해

1. 이 목록은 제10장(투자)에 따라 작성된다. 제8장(서비스 무역)에 및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따라 작성된 모든 태국의 약속은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및 부속서 IV(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각각의 태국 양허표에서 확인된다.

2.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조치)에 따라, 이 목록은 다음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으며 태국이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3.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른 목록 가 및 이 목록은 두 목록 방식과 함께 네거티브 목록을 따르며,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목록 가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와 관련된 약속을 규정한다.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 제1항은 이 목록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 나. 이 목록은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서의 조치와 관련된 정책 유연성을 규정한다.

4. 각 유보항목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 또는 분야들을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산업, 제품 및 행위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제3차 개정안에 따라 유보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유보가 분류체계에 정확하게 합치하지 않는 경우 태국은 그 유보의 정확한 적용범위를 명시할 수 있다.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예: 중앙 또는 지방)을 명시한다.

마. **의무유형**은, 각 경우에 맞게,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칭한다.

바. **조치내용**은 유보에 대하여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기술한다. 그리고

사. **조치근거**는 유보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에 대하여 투명성 목적으로만 적시된다.

5. 유보를 해석할 때,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조치내용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6. 이 주해는 이 목록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국가평화질서위원회 위원장이 어떠한 분야의 개혁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강화하거나, 공공의 평화와 질서 또는 국가안보, 왕실, 국가 경제나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 중단,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 행위가 태국 안 또는 밖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평화질서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중단 또는 억제 명령을 그 명령에 대한 입법권, 행정권, 또는 사법권에 관계없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경우, 그 명령이나 조치 또는 그 명령에 따른 모든 이행은 합법적이고 합헌적이며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국가입법의회와 총리에게 지체 없이 보고된다.</p> <p>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정부관료 또는 경찰관료, 행정관료 또는 군관료가 합동으로 지원 제공, 비상상황 방지, 구제, 억제, 저지하거나 재건 또는 국민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권력 사용이 적절하다고 총리가 판단하는 경우, 총리는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상황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이나 지방에 적용 가능한 비상 상황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기 2560 년 (2017) 태국 왕국 헌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457 년 (1914) 계엄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48 년 (2005) 비상 상황 시 행정에 관한 긴급 칙령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51년 (2008) 국내보안법

2.

분야	:	농업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태국은 농업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투자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양파 종자 번식 - 외국인 지분 참여는 목록 가 4 번 유보항목에 명시된 대로 등록된 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 육우 사업 - 외국인 지분 참여는 목록 가 10 번 유보항목에 명시된 대로 등록된 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조치근거	:	-

3.

분야	:	수산업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태국은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투자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참다랑어 심해 가두리 양식</u> - 외국인 지분 참여는 목록 가 5번 유보항목에 명시된 대로 등록된 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u>토착 변식 스파이니 랍스터</u> [<u>파누리루스 버시컬러</u> (<i>Panulirus versicolor</i>), <u>파누리루스 호마루스</u> (<i>P. homarus</i>), <u>파누리루스 오나투스</u> (<i>P. ornatus</i>), <u>파누리루스 롱기페스</u> (<i>P. longipes</i>), <u>파누리루스 페니시라투스</u> (<i>P. penicilatus</i>) 및 <u>파누리루스 폴리하구스</u> (<i>P. polyphagus</i>)] : 외국인 지분 참여는 목록 가 5번 유보항목에 명시된 대로 등록된 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조치근거	:	-

4.

분야	:	임업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태국은 조림 및 산림 산업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투자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42 년(1999) 외국인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07 년(1964) 자연보전산림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35 년(1992) 상업조림법

5.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그리고 에너지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ISIC 10-14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태국은 광업 및 채석업,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투자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u>대리석 광업</u> : 외국인 지분 참여는 목록 가 6 번 유보항목에 명시된 대로 등록된 자본의 49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u>석유 및 가스 관련 추출</u> : 외국인 지분 참여는 목록 가 7번 유보항목에 명시된 대로 등록된 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치근거	:	-

6.

분야	:	제조업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태국은 외국인²이 등록된 자본의 최대 100퍼센트까지 획득하는 것이 허용되는 다음의 하위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제조업 (ISIC 3410). - 자동차 및 그 엔진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조업 (ISIC 3430). - 가구 제조업 (ISIC 3610). 다만, 목각 가구 제품은 제외한다. - 가공 섬유 제조업 (ISIC 1712). 태국 실크의 생산, 직조 또는 날염에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 방직용 섬유 준비 및 방적업, 섬유 직조 (ISIC 1711). 태국 실크의 생산, 직조 또는 날염에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ISIC 2520) - 전기 LED 램프 및 조명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ISIC 4 차 개정안 - 2610 전자부품 및 기판 제조업) - 가정용 기기 제조업 (ISIC 2930) - 사무·회계·컴퓨팅 기계 제조업 (ISIC 3000) - 전동기·발전기·변압기 제조업 (ISIC 3110) - 전기 램프 및 조명기구 제조업 (ISIC 3150) - 텔레비전 및 라디오 수신기기, 음성 또는 영상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및 관련 상품 제조업 (ISIC 3230) - 스포츠 상품 제조업 (ISIC 3693) - 다목적 산업용 로봇 제조업 (ISIC 2929 그 밖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일부)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ISIC 3130)

²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의 정의는 「불기 2542 년(1999) 외국인사업법」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장치 제조업 (ISIC 3000 사무·회계·컴퓨팅 기계 제조업의 일부) - 가방,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물품, 마구류 제조업 (ISIC 1912) - 시계 제조업 (ISIC 3330) - 유제품 제조업 (ISIC 1520) -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ISIC 1532) - 마카로니 제조업 (ISIC 1544 의 일부) - 식품 가공 제조업
조치근거	:	-

7.

분야	:	모든 신규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태국은 태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에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제3차 개정안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n.e.c.)”으로 명시된 분야 또는 하위분야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8.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조치내용	:	<p>태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모든 국제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투자자 또는 투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다음과 같이 확장된다.</p> <p>(a) 관련 국제 협정에 대한 후속 검토나 개정, 또는 당사자나 비당사자와의 모든 형태의 경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특혜 대우, 그리고</p> <p>(b)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부여되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모든 특혜 대우</p> <p>태국은 다음 분야에 대하여,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모든 국제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투자자 또는 투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 사육을 제외한 농업 - 수산업 및 해상 사안, 그리고 - 임업 <p>태국은 다른 국제 투자 조약 및 다른 무역 협정에 규정된 투자자와 국가 간의 투자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나 대우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조치근거	:	-

9.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p>외국 국민 또는 외국인³으로 간주되는 국내 기업은 태국에서의 토지 매입 또는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토지를 임차 또는 대여하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p> <p>태국은 토지 용도지구제, 토지 이용, 도시 계획, 개발 통제, 보전 및 보존 정책, 그리고 환경보호, 자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관련 정책에 따라 토지에서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행위 또는 토지의 개발이나 이용을 포함하는 태국에서의 토지 취득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법전 - 민법 및 상법전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42 년(1999)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 대여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18 년(1975) 농경지개혁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59 년(2016) 농업용 토지임대차법(제 2 호)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497 년(1954) 토지법전 공포법 - 불기 2535 년(1992) 농경지 개혁에 따른 토지 취득 자격을 갖춘 농업인 선정을 위한 규칙·절차·조건에 관한 농경지개혁집행위원회 규정 - 불기 2541 년(1998) 농경지 개혁을 지원하는 또는 농경지 개혁과 관련된 행위를 위한 토지 또는 부동산 활용에 관한 허가 부여 및 허가 취득자에 의한 준수를 위한 규칙·절차·조건에 관한 농경지개혁집행위원회 규정

³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외국인의 정의는 「불기 2542 년(1999) 외국인사업법」을 따른다.

10.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태국은 다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정부 권한의 행사를 통해 투자를 민간 부문으로 이양 2.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단체나 자산의 민영화, 그리고 3.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을 통한 자산의 투자 회수
조치근거	:	—

1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태국은 포트폴리오 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1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조치내용	:	<p>태국은 태국 바트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 의한 외환 거래와 관련된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 그리고 비거주자에 의한 현지 통화 거래 및 보유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주석: 태국 바트화 투기를 방지하는 조치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바트화 유동성 제한 조치 - 자본 유입 억제 조치 - 비거주자 바트화 계좌(NRBA) 및 비거주자 바트화 증권계좌(NRBS)에 관한 조치 - 차액결제선물환에 관한 조치
조치근거	:	-

1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태국은 중소기업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불기 2543 년 (2000)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특성은 산업에 관한 시행규칙에 정의되어 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형 기업이나 회사 또는 사업체 - 제조 회사 및 서비스 제공자의 고용 인원이 50 인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회사의 고정자산이 5 천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 중형 기업이나 회사 또는 사업체 - 제조 회사 및 서비스 제공자의 고용 인원이 51 인에서 200 인 사이이며 그 회사의 고정자산이 5 천만 바트에서 2 억 바트 사이이다.
조치근거	: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20 년(1977) 투자진흥법 및 그에 따른 고시 및 규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43 년(2000) 중소기업진흥법 및 불기 2561 년(2018) 개정법 그리고 그 시행규칙, 하위 법령 및 고시

1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u>소수인 및 취약인</u> 태국은 소수인 및 취약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15.

분야	:	산업단지
하위분야	:	산업단지의 설립 또는 확장 산업단지 구역에 대한 토지권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p>태국은 산업단지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태국산업단지공사(IEAT)에 산업단지 설립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을 신청하는 인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보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법인일 것. -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증명하는 증거 또는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취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갖출 것. <p>외국인⁴ 사업 운영자가 사업을 해산하거나 다른 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사업 운영자는 각 경우에 맞게 그러한 해산 또는 사업 양도일로부터 3년 내에 이 통고에 따라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허가가 부여된 토지를 IEAT 또는 사업 양수인에게 처분한다. 산업 기업가 또는 거래자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토지국 국장이 토지법전에 따라 그러한 토지와 그 구성품을 IEAT 또는 타인에게 처분한다.</p> <p>태국에 체류하면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숙련된 근로자 또는 전문가인 외국인의 수를 고려하는 규칙으로서, IEAT 는 사업 운영자의 사업 업종, 등록된 자본, 태국 근로자의 수 및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산업단지에서의 근무 기간과 수에 따라 사업 운영자가 태국에 체류할 외국인을 데려오기 위한 허가 부여를 고려한다.</p>

⁴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외국인”의 정의는 「불기 2542년(1999) 외국인사업법」을 따른다.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통고 및 행정 지침을 포함하는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52 년(1979) 태국산업단지공사법 - 규정, 통고 및 행정 지침을 포함하는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35 년 (1992) 국가환경질개선및보전법 - 규정, 통고 및 행정 지침을 포함하는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35 년(1992) 공장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61 년(2018) 동부경제회랑법
------	--

1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지방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태국은 환경, 보건 또는 문화와 관련된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17.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태국은 기술이전에 대한 정부 요건과 관련된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18.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태국은 과세에 대한 정부의 로열티 요건과 관련된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19.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p>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⁵은 사업개발국에서 면허 또는 증명서를 받고 「불기 2542년(1999) 외국인사업법」⁶ 및 하위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한다.</p> <p>외국인은 「최소 자본금 및 태국 내 최소 자본금 유입 또는 송금 기간을 규정한 불기 2562년(2019) 시행규칙」에 명시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불기 2542년(1999) 외국인사업법」에 부속된 목록에 따라 사업 개시 시점에 등록되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은 상무부 규정에 규정된 금액 이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3 백만 바트 이상이다.</p> <p>그 밖의 다른 모든 경우에, 사업 운영 개시 시점에 등록되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은 상무부 규정에 규정된 금액 이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2백만 바트 이상이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바에 따른 불기 2542년(1999) 외국인사업법 및 하위 법령 - 최소 자본금 및 최소 자본금의 태국 유입 또는 송금 기간을 규정한 불기 2562년(2019) 시행규칙

⁵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의 정의는 「불기 2542년(1999) 외국인사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⁶ 설명의 목적상, “「불기 2542년(1999) 외국인사업법」에 규정된 조건”은, 예를 들어, 자본 대 부채 비율 그리고 태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외국인 이사의 수를 포함할 수 있다.

20.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외국인 ⁷ 은 「불기 2542년(1999) 외국인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사업 운영을 위한 허가 부여에 있어, 국가 안전 및 안보,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공서양속, 예술·문화·전통·관습에 대한 국가적 가치, 천연자원 보존, 에너지, 환경 보전, 소비자 보호, 사업 규모, 고용, 기술이전, 연구개발에 미치는 유리한 그리고 불리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5절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조치근거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42년(1999) 외국인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

⁷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외국인”의 정의는 「불기 2542년(1999) 외국인사업법」을 따른다.

21.

분야	:	모든 서비스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태국은 서비스 분야의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2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분야	:	-
산업분류	:	-
정부수준	:	모든 수준
의무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20 년(1977) 투자진흥법」 및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60 년(2017) 대상산업경쟁력강화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태국의 투자 진흥 제도에 합치되게, 우대가 부여되는 투자 프로젝트는 태국 투자청과 대상산업경쟁력강화 정책 위원회 각각의 승인을 요구한다. 투자자는 투자 진흥 제도에 규정된 기준과 규제 당국 및 관련 부처에서 규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치근거	: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20 년(1977) 투자진흥법 - 개정되는 바에 따른 불기 2560 년(2017) 대상산업경쟁력강화법